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53

발의연월일: 2024. 9. 20.

발 의 자:임광현·정일영·오기형

김태년 • 윤호중 • 이연희

정성호 · 정태호 · 안태준

강준현 · 김영환 · 박홍배

이기헌 · 황정아 · 김기표

문금주 • 윤종군 • 이재관

민홍철 • 박민규 • 정준호

안규백 · 차지호 · 정진욱

박찬대 • 박희승 • 최기상

임미애 · 조계워 의위

(2991)

제안이유

현행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하여 2단계의 누진세율로 분류과 세하도록 하면서,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 통산과 손실 이월 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조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원천징수 및 예정신고납부 제도를 두었으나, 반기별 원천징 수 및 인출제한에 따른 투자자의 기회비용 상실이 우려되고 있음. 따 라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방식을 확정신고납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투자소득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과 같이 과세기간 다음 연도의 확정신고 및 납부만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납부를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장의2제6절(제87조의21 및 제87조의22) 삭제 등].
- 나.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를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 [안 제127조제1항, 제128조제1항, 제129조, 제5장제1절제7관(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 삭제 등].
- 다.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납부 및 원천징수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부칙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광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41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4제2항제1호나목 중 "신고(같은 조 제3항제3호 단서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고"로 한다. 제2장의2제6절(제87조의21 및 제87조의22)을 삭제한다.

제87조의23제3항제1호 중 "제87조의22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및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합계액"을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으로 한다.

제87조의24제3항 중 "제87조의22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과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으로 한 다.

제87조의25제1항 중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금융 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로 한다.

제87조의26제1항 중 "제87조의22 및 제87조의24"를 "제87조의24"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1. 제87조의24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 또는 제9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중 "징수일이 속하는 달(금융투자소득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 중에 금융계좌가 해지된 경우에는 그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징수일이 속하는 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부분 중 "원천징수의무자(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외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 및 제9호"를 각각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장제1절제7관(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을 삭제한다.

제155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원천징수기간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제17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등"을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거나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189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5제6항을 삭제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제1항 중 "제129조제1항제9호"를 "제87조의19"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8제3항 중 "예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는 했으나 금융투자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되"를 "「소득세법」 제10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준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되"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7제3항 중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배당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원천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 및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46조의2제1항 중 "원천징수의무자"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로, "하고, 해당 소득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122조)및 같은법 제87조의4에 따라 계산한다"를 "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즉시 추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2조) 및 같은 법 제87조의4에 따라 계산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개정법률
제87조의4(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제87조의4(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의 계산) ① (생 략)	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은 제	②
87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례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	
다.	<u>.</u>
1. 제87조의7제2항에 따른 금융	1
투자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이하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이라	
한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87조의23에 따라 <u>신고</u>	나 <u>신고</u>
(같은 조 제3항제3호 단서	
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포	
<u>함한다)</u> 하거나 제87조의25	
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에 포함된 금융투자결손금 일 것

③ · ④ (생 략) 제6절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와 납부

제87조의21(금융투자소득 예정신 <삭 제> 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예 정신고 대상소득"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자는 제87조의7에 따 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 1.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 지 아니한 금융투자소득
- 2.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 은 금융투자소득 중 제127조 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 한 소득
- 3. 제87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 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부 분에 대한 소득

③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지급 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의 마지막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 장 에서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라 한다.

제87조의22(예정신고납부) ① 거 <삭 제> 주자가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이하 "예정신고 산출세액"이라 한다) 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 (예정신고 대상소득금액에 감 면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 다)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 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 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또는 제87조의27에 따 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 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④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계산방 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23(금융투자소득과세표 준 확정신고) ① · ② (생략)

- ③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금융투자소 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제87조의5에 따른 금융투자 소득 총결정세액이 제87조의 22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 른 수시부과세액 및 제127조 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합 계액을 초과하는 자
- 2. (생략)
- 3.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결 손금액을 확정하려는 자. <u>다</u> 만, 제87조의21에 따른 예정 신고 대상소득을 지급받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금융투자 결손금액을 확정하려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4.

제87조의23(금융투자소득과세표
준 확정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
<u>세액</u>
2. (현행과 같음)
3
<u>서 삭제></u>

규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 등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 다만, 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만 있는 자가 해당 소득에 대한조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⑤ (생 략) 제87조의24(확정신고납부) ① · 저
 - ② (생략)
- ③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7조의22에 따라 납부하였거 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 과세액과 제127조에 따른 원천 징수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87조의25(금융투자소득과세표 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① 납 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금융투자소득 예정 신고,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 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과

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
④·⑤ (현행과 같음)
l87조의24(확정신고납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
87조의25(금융투자소득과세표
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①
금융투자소득과세표
준 확정신고

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u>금융투자소득</u> 예정신고, 금융투자소득과세표 <u>준 확정신고</u>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투 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③ ~ ⑥ (생 략)

제87조의26(금융투자소득세액의 징수·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 무서장은 <u>제87조의22 및 제87</u> <u>조의24</u>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세 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금융투자소득세액을 「국세징 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② (생 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 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 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

(2)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7조의26(금융투자소득세액의
징수·환급) ①
제87조의24
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 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 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 액만을 징수한다.

-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 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 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 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 이 제87조의25에 따라 그 납 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이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4	

- 1. 제87조의22에 따른 예정신고 납부세액과 제87조의24에 따 른 확정신고납부세액
- 2.·3. (생략)
-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한다.
 - 1. ~ 8. (생략)
 -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
 - ② ~ ⑥ (생 략)
 - ① 금융회사등이 금융투자소득 이 발생하는 계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제1 항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을 지 급하는 자 간에 대리 또는 위

<u>1. 제87조의24에 따른 확정신고</u>
납부세액
2.·3.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제3
<u>—</u> ই
<u>4-</u>
<u>.</u>
1. ~ 8. (현행과 같음)
<박 제>
N 1 (1)/

② ~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⑧ 제1항부터 <u>제7항</u>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한다.

⑨ (생략)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u>징수일이 속하는</u> 달(금융투자소득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 중에 금융계 좌가 해지된 경우에는 그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금융투 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 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

⑧ <u>제6항</u>	-
 ⑨ (현행과 같음)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u>징</u> 수일이 속하는 <u>달</u>	- - -
	•
② <u>원천징수의무자</u>	-
	-

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 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 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 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 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다.

- 1. ~ 8. (생략)
-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20
- ② · ③ (생 략)
- 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9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1. ~ 3. (현행과 같음)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1. ~ 8.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②·③ (현행과 같음) ④
<u>মা2ত</u>

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1. ~ 3. (생략)
- ⑤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제127조 제1항제2호 및 제9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 징수세액으로 한다.
- 1.·2. (생략)
-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 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을 한도로 한다.
- 1. (생략)
- 2. 제127조제1항제9호의 금융투자소득: 다음 계산식에 따라계산한 금액

공제한도금액 = A $\times \frac{B}{C}$

- A: 제148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 기간의 반기별 금융투자소득세
- B: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 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반기별 합계액
- C: 제148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

,
1. ~ 3. (현행과 같음)
⑤
<u>সা2ই</u>
1.·2. (현행과 같음)
6
<u>.</u>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기간의 반기별 금융투자소득금액

 ⑦ · ⑧ (생 략)

 제7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제148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금 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하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기간"이라 한다) 중 관리하는 모든 계좌에 대하여 금융투자 소득금액을 계좌보유자별로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 손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 1.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
- 2. 반기 중 계좌를 해지한 경우

 반기 시작일부터 계좌해지일

 까지
-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후 원 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융투자소득세를 금융투자소 득 원천징수기간의 종료일에

⑦ · ⑧ (현행과 같음)<삭 제>

<삭 제>

원천징수한다.

- ③ 금융회사등은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에 각 계좌보유자 별로 금융투자소득금액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 적 관리하여야 하며, 계좌보유 자별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기간 중 인 출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상반기의 계좌보유자별 금 융투자결손금은 하반기의 원천 징수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에 서 공제한다.
- 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 장수기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금융회사등에 원천징수배제신 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⑥ 금융회사등은 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받은 경 우 해당 금융투자소득을 원천 징수에서 제외하고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 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원천징수 절차, 기본공제 적용방법 등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8조의3(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반기 중계좌를 해지한 경우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계좌보유자에게 계좌보유자에게 계좌보유자에게 계좌보유자에게 계좌보유자에게 계좌보유자에게 계좌보유자에게 계좌보유자에게 계좌보유자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 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반기마지막 달(반기 중계좌를 해지한 경우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

<삭 제>

지 금융투자소득을 받는 자에 게 그 금융투자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의 무자는 금융투자소득의 지급금 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 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신탁의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소 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1. (생 략)
- 2. 제127조제7항에 따라 원천징 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 은 금융회사등이 제127조제1 항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 원 천징수할 때에는 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을 준용하여 징수할 것

제	155조의2(특	-정금전	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1.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	
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	
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	
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	
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	
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	
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	
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	
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	

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 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 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 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 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 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 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 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호의 금융투자소 득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8. (생략)

9. 금융투자소득

② ~ ⑪ (생 략)

제174조의2(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저 보유 내역 제출 및 보관) ①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
1. ~ 8. (현행과 같음)
<u><</u> 삭 제>
② ~ ① (현행과 같음)
ll174조의2(금융투자상품의 거래·
보유 내역 제출 및 보관) ①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자료제출대상금융 회사등"이라 한다)은 금융투자 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장에게 제출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2.	(생	략)	
(2)	~ (4)	(생	럌)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게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거나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계좌
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